REAGENTS DUKSAN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명 : M-인산[meta-Phosphoric Acid]

CAS NO	KE NO	UN NO	EC NO
37267-86-0	KE-23137	3260	253-433-4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M-인산[meta-Phosphoric Acid]

동의어 : 인산, 메타(PHOSPHORIC ACID, META);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용도 : 19.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음용불가,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다. 공급자 정보
회사명 : 덕산약품공업(주)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133번길 53
담당부서 : 관리부
긴급전화번호 : 031 - 495 - 4055 (평일, 08:30~17:30)

2. 유해성 · 위험성

가. 유해성 · 위험성 분류 :
금속 부식성물질 구분 1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유해 · 위험 문구 :
H290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예방조치문구

예방
P234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대응

P390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저장
P406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 등에 보관하시오.

폐기
- 해당없음

다. 유해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 위험성
○　NFPA 보건 :　0.　화재 :　0.　반응성 :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명 : meta-Phosphoric Acid
관용명 및 이명 : 인산, 메타(PHOSPHORIC ACID, META);
CAS NO : 37267-86-0
함유량 : 100 %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 했을 때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마.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인산화물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화재 진압 시 방화복, 소방용 구조헬멧, 소방용 안전화, 소방용 안전장갑,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항 참조)를 착용하여,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누출물이 하수시설,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도(환경지도과)에 신고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다량누출 :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해 처리하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작은 고체상 유출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누출된 물질은 적당한 용기에 쓸어 담고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시오.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시오.
강산화제와 접촉을 피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시오.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
정전기를 방지하고 보일러 등의 열원근처나 가연물 주위는 피해서 보관하시오.
금속용기에 저장하지 마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
국내규정 : 자료없음
ACGIH 규정 :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방법 :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를 권장함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분진, 미스트, 흄용 호흡보호구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 화합물용)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눈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9. 물리 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 고체
  색상 : 무색
나. 냄새 : 무취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200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600 ℃
사. 인화점 :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하. 비중 : 2 g/cm^3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인산화물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

다.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금속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부식성, 독성 가스, 인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자료없음
  경구: 자료없음

눈, 피부: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경구 : 자료없음
경피 : 자료없음
흡입 : 자료없음

◯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과민성 : 자료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노동부고시 : 자료없음
IARC : 자료없음
OSHA : 자료없음
ACGIH : 자료없음
NTP : 자료없음
EU CLP : 자료없음

◯ 생식세포변이원성 : 자료없음

◯ 생식독성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노출)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 : 자료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 독성 :
어류 : LC50 116000 96 hr 기타(estimate) (ECOSAR)
갑각류 : LC50 37618.707 48 hr 기타(estimate) (ECOSAR)
조류 : EC50 3550.019 ㎎/ℓ 96 hr 기타(estimate) (ECOSAR)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1.72 log Kow (EPISUITE)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농축성 : 3.162 (EPISUITE)
생분해성 :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
1.194 (EPISUITE)

마. 오존층 유해성 :
해당없음

바.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소각 처리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 3260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CORROSIVE, SOLID, ACIDIC, INORGANIC, N.O.S.

다. 유엔 적정 선적명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8
용기등급 : III
해양오염물질 : 해당없음

라.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안전대책 :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화재시 비상조치 : F-A
유출시 비상조치 : S-B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PSM대상물질 : 해당없음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허가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 기존화학물질 : 해당됨
- 신규화학물질 :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 해당없음
- 유해성미확인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제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한국안전보건공단(KOSHA)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NCIS)
◯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 본 MSDS는 KOSHA, NCIS, ECHA, NITE, NLM, SIDS, ICSCs, IPCS, ES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 작성일자 : 2015-12-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횟수 : 3
◯ 최종 개정일자 : 2020-01-02

라. 기타
자료없음

변경된 MSDS가 홈페이지에 있으니 www.duksan.kr 에서 최신 MSDS를 출력 하세요.
본 MSDS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참고된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사용, 저장, 운송 및 폐기를 위한 안내자료이나, 각각의 사용에 따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